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p>		

<p>용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p>		
---	--	--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p>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p> <p>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p>	

<p>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장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p>		
<p>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p>	

<p>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5. 자산 총액</p>	
<p>제8조(시·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① 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5조(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①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5. 조직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p>	

<p>령으로 정한다.</p>	<p>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6조(시·도서비스원 설립 협의)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자원 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의 시·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p>	

	<p>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도서비스원의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상황 	

<p>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p> <p>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p>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범위 등)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 	

<p>탁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73조(학대, 존속학대), 제 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p> <p>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 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p> <p>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p> <p>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까지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p> <p>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까지, 제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의2(상습범) 및 제 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p> <p>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p>	
---	---	--

	<p>조의2(인질강요)부터 제 324조의5(미수범)까지, 제 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p> <p>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p> <p>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p> <p>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p> <p>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p> <p>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p> <p>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p> <p>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p> <p>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p>	
--	---	--

	<p>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p> <p>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p> <p>5.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p> <p>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p> <p>②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p>		

<p>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3조(정관)①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시·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9조(정관 기재사항)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2. 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방법 등 시·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p>제14조(임원추천위원회)① 시·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p> <p>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p> <p>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시·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시·도서비스원의 임원을 	

<p>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p> <p>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p> <p>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p> <p>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위원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⑥ 시·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p>	
---	--	--

	<p>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⑧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⑨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p>	

	<p>절차)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및 시·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p>	
--	--	--

	<p>거나 시·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p>	
<p>제15조(임원)① 시·도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p> <p>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제16조(임원의 임명)① 원장을 포함한 시·도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p> <p>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2조(임원의 임명)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 	

<p>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p> <p>③ 시·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p>당하는 공무원</p>	
<p>제17조(임원의 임기)①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3조(임원의 임기)시·도</p>	

<p>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p>제18조(임원의 해임)①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4조(임원의 해임)① 시·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p> <p>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도서비스원 임원 해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20조(이사회)① 시·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p>		

<p>기 위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제21조(성과계약)① 시·도지사 및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2조(직원의 채용)① 시·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p>		

<p>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p> <p>② 시·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p> <p>④ 시·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시·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p>		
---	--	--

<p>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3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① 시·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회계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p> <p>④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p>		

<p>시·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p>		
<p>제25조(회계연도) 시·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p> <p>① 시·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시·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①</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p> <p>②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서비스원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p>

<p>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① 시·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시·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시·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p>③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p> <p>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p>로 정한다.</p>
--	--	---------------

<p>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p>② 시·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p>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p> <p>④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p>		
<p>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p>		
<p>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 자산 총액 	

<p>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입·지출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p>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p> <p>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p>	
<p>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p>		

<p>업무)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서비스원의 정책 홍보, 시·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p>		

<p>“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도”는 “정부”로 본다.</p>		
<p>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p>		
<p>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인사 및 재무관

<p>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⑧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리 현황</p> <p>4. 전년도 결산서</p> <p>5. 최근 3년간 경영실적</p> <p>④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야 한다.</p>
<p>제35조(경영공시)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직원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 경영평가등의 결과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① 시·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p>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p>
<p>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p>		

<p>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및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기</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p>	

<p>록·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사회서비스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제5장 보칙</p>		
<p>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p> <p>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p>		

<p>임·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지도·감독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시·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p>		

<p>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① 시·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p> <p>② 시·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① 시·도 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p> <p>② 시·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p>	

	<p>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③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부금품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 <p>④ 시·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p>	
<p>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p>		

(위임법령 3단비교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p>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6장 벌칙</p>		
<p>제45조(과태료)①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